

대한국제법학회 학술분과위원회규정

2001년 6월 22일 제정

2010년 1월 30일 개정

2012년 3월 24일 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분과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한다)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원회 설치의 목적 및 기준)

① 학회는 연구 및 학술활동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학회는 국제법의 분야별 구분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3조 (회원들의 위원회 소속) 모든 회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소속 위원회를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.

제4조 (위원회의 장 및 간사위원)

① 각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추천되며,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
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

③ 위원장의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으로 한다.

④ 각 위원회에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위원을 둔다.

제5조 (위원회의 연구계획 수립 및 제출)

① 각 위원회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.

② 회장은 각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연구계획을 종합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통보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연구활동) 각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단, 대외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 (위원회의 연구결과 발표) 각 위원회는 매년말 당해연도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.

제8조 (학회 연구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의 참여)

① 회장은 학회의 연구발표회 개최 및 기타 연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, 해당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특정의 연구활동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9조 (위원회 활동의 보조) 학회는 각 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

한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한다.

제10조 (기타 사항의 결정)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직무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경과규정

〈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활동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.〉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